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11월 26일

○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7일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850,000원으로 함.(안 제3조 제1항)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유급수준을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 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타 시도교육위원과의 의정비를 비교해 볼때 적정한 의정비 임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시도별 교육위원 의정비 책정 현황>

“별첨”

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별첨>

시·도별 교육위원 의정비 책정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의정비현황			시·도의회 상정예정일		비 고
	2007년	2008년	인상률	상정일	의결여부	
서울	50,400	50,400	0			
부산	44,484	44,484	0			
대구	37,200	43,440	16.77	12. 18.		
인천	41,110	46,779	13.79	12. 04.		
광주	38,640	38,640	0			
대전	35,040	42,000	19.86	11. 26.	원안가결	
울산	38,160	47,304	23.96	12. 03		
경기	54,216	54,216	0			
강원	35,040	40,002	14.16	11. 29	원안가결	
충북	32,400	40,200	24.07	12. 07		
충남	38,496	40,032	3.99	12. 10.		
전북	35,400	40,020	13.05	12. 04.		
전남	35,640	39,036	9.53	12월중		
경북	32,880	40,950	24.54	2008. 1.		
경남	41,400	43,512	5.10	12. 14.		